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11
------------	------

2021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 5.27.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0. 6. 1.

4.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1.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1. 7. 2.)

- 승인

II. 제안설명 (재무국장 : 이병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615억 5,300만원 중 1,267억 4,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58억 1,8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480억 3,700만원
- 지출결정액	1,238억 9,100만원
- 지출액	1,230억 6,600만원
- 이월액	4,90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7억 7,7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91억 200만원
- 지출결정액	28억 5,200만원
- 지출액	27억 5,3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억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44억 1,400만원
-----------	-------------

- 지출결정액 0만원
- 지출액 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1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0회계연도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¹⁾

- '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6조 7,985억 1,4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40조 948억 4,700만원) 보다 16.7%, 6조 7,036억 6,7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45조 2,240억 4,500만원은 당초 본예산(39조 5,359억 1,300만원), 간주처리분(1조 28억 5,500만원), 추경증액조정분(4조 6,852억 7,7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1조 5,744억 6,800만원)을 합한 '20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40조 948억 4,700만원)보다 16.7%, 6조 7,036억 6,700만원 증가한 46조 7,985억 1,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41조 6,747억 8,700만원)보다 18.8%, 7조 8,649억 1,100만원 증가한 49조 5,396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조 8,728억 2,800만원과 특별회계 13조 6,668억 7,0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37조 3,259억 5,100만원)보다 18.9%, 7조 840억원 증가한 44조 4,099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조 9,521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12조 4,578억 1,0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4조 3,488억 3,600만원) 보다 7,809억 1,000만원 증가한 5조 1,297억 4,600만원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0	총계	46,798,514 <2020최종> 45,224,045 <2019→2020이월> 1,574,468	49,539,698 (105.9%)	44,409,951 (94.9%)	5,129,746 (11.0%)	명 시 이 월 ^{주1)} 423,097 사 고 이 월 610,921 건설개량이월 ^{주1)} 27,586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08,205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주2)} - 순 세 계 잉 여 금 4,012,630
	일반회계	32,943,048 <2020최종> 32,682,236 <2019→2020이월> 260,811	35,872,828 (108.9%)	31,952,141 (97.0%)	3,920,686 (11.9%)	명 시 이 월 ^{주1)} 184,969 사 고 이 월 167,379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03,062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주2)} - 순 세 계 잉 여 금 3,465,276
	특별회계	13,855,466 <2020최종> 12,541,808 <2019→2020이월> 1,313,657	13,666,870 (98.6%)	12,457,810 (89.9%)	1,209,060 (8.7%)	명 시 이 월 ^{주1)} 238,128 사 고 이 월 443,542 건설개량이월 ^{주1)} 27,586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5,142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주2)} - 순 세 계 잉 여 금 547,354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주2)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20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에 물납 등이 추가되었음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7134 ('21. 4. 2)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 '20회계연도 예비비는 1,6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1,267억 4,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258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 행 잔 액 (가)-(나)-(다)
합 계	161,553	126,743	125,818	48	876
일 반 회 계	148,037	123,891	123,065	48	776
특 별 회 계 ^{주1)}	13,516	2,852	2,752	-	99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8 ('21. 3.24)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한 '20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조 5,921억 6,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3조 5,459억 2,200만원)보다 462억 4,600만원 증가한 것임
 - '20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조 6,985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6,523억 300만원임
-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4조 5,479억 600만원, 지출은 4조 5,411억 9,9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내용을 제출하였음

3.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 받고 있음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0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1,29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년 5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189억 9,000만원)과 8월, 제4회 추가경정예산(△3억 5,000만원)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비비를 1,480억 3,7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표 3-3〉 2020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총계	145,186	-	-	16,823	△456	161,553
일반회계	129,397	-	-	18,990	△350	148,037
일반예비비	109,397	-	-	18,990	△350	128,037
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특별회계	15,789	-	-	△2,166	△106	13,5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8 ('21. 3.24)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예비비가 편성된 9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615억 5,300만원으로 이 중 1,267억 4,300만원(113건)을 지출결정하여 1,258억 1,800만원(113건)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1,480억 3,700만원 중 1,238억 9,100만원(107건)을 지출결정하고, 1,230억 6,600만원(107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8억 5,200만원(6건)을 지출결정하고, 27억 5,200만원(6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 예비비 지출현황 ('20~'18)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2020	소 계	161,553	126,743	125,818	48	877
	일반회계	148,037	123,891	123,066	48	777
	특별회계	13,516	2,852	2,752	0	99
2019	소 계	246,199	166,268	165,764	0	504
	일반회계	211,938	161,411	161,350	0	61
	특별회계	34,261	4,857	4,414	0	443
2018	소 계	245,728	39,399	38,846	0	553
	일반회계	196,982	30,679	30,125	0	553
	특별회계	48,746	8,721	8,721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8 ('21. 3.24)

-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 바,
 - 서울수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1,480억 3,700만원)중 59건, 610억 5,600만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로 제출함

〈표 3-5〉 예비비 지출액중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출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예비비 (A)	코로나 19 대응 관련 예비비 지출액 (B)	비 율 B/A
'20회계연도	148,037	61,056	41.2

※ 일반회계로 한정

○ 그러나 '2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사례가 발생된 바, 직전회계연도 보다 △31.8% 포인트 감소된 것이라 하여도 여전히 예비비를 통한 소송 관련 비용이 304억 3,200만원(29건)이 지출된 것으로 검토됨

- 예비비를 통해 소송과 관련된 비용 지출사례는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재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희석시킬 수도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구와 지출결정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중 소송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예비비 지출액 ^{주1)} (A)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액 (B)	비 율 B/A
' 2 0 회 계 연 도	106,696	30,432	28.5
' 1 9 회 계 연 도	161,349	97,228	60.3
' 1 8 회 계 연 도	30,125	23,870	79.2
' 1 7 회 계 연 도	4,313	3,692	85.6

※ 주1)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제외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재해대책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20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보조금을 지출한 사례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100건, 1,219억 8,700만원) 중 21.6%, 263억 9,800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16건, 193억 6,5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2건, 3억 2,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3건, 62억 2,1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5건, 4억 9,100만원)로 지출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3-7〉 예비비 지출액중 재난 관련 보조금 지출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A)	보조금 관련 예비비 지출액 (B)	비 율 B/A
계	121,987	26,398	21.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365	15.8
자치단체자본보조		321	0.2
민간경상사업보조		6,221	5.1
사회복지사업보조		491	0.4

-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지속적인 확산 등으로 코로나19를 긴급 재난으로 포고함에 따라 관련 법령은 예비비의 보조금 사용에 대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한 사례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은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문화분부는 '20년 12월,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사용요구 함에 따라 예산부서가 12월 28일, 예비비를 사용승인 하여 '20년 12월 29일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8〉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예비비 사용 승인일
예 비 비	일 반 예 비 비	33,064	△155	0	'20.12.28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출 연 금	35,881	0	155	

■ 예비비를 통하여 출연금이 지출된 것이나, 이미 동일 사유로 '20년 6월과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가 있고, 출연금 확보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음

〈표 3-9〉 2020회계연도중 관련 출연 동의안 제출현황(추경예산시)

(단위 : 백만원)

의안명	출연 동의안 제출일	출연 동의안 가결일	출연 동의안 제출사유	관련 추경예산 편성액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20. 5.25	‘20. 6.30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른 DDP 대관 및 임대 수익 손실 보전	541 ^{주1)}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20. 8.12	‘20. 9.15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른 DDP 대관 및 임대 수익 손실 보전	1,000 ^{주2)}

※ 주1)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주2)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 그러나 동 예비비 지출건의 경우, 지난 두 번의 추경예산과 동일한 사유로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는 사안임에도 예비비 지출에 앞서 별도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예비비 지출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추경예산을 통하여 출연금을 확보 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행 법령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법규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예비비로 지출된 세종문화회관 출연금(2,500만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예비비 지출사례와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0〉 예비비중 출연금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지출결정일	예비비 지출사유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5,509	2020.12.28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 료 손실 보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155,560	2020.12.29	서울디자인재단 임차 소상공인 지원임대 료 손실 보전

○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 결제 캠페인 지원사업 추진”을 사유로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에 예비비 116억 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사용승인된 예비비(116억 5,000만원)는 전액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무관리비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발행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동 예비비 사용 건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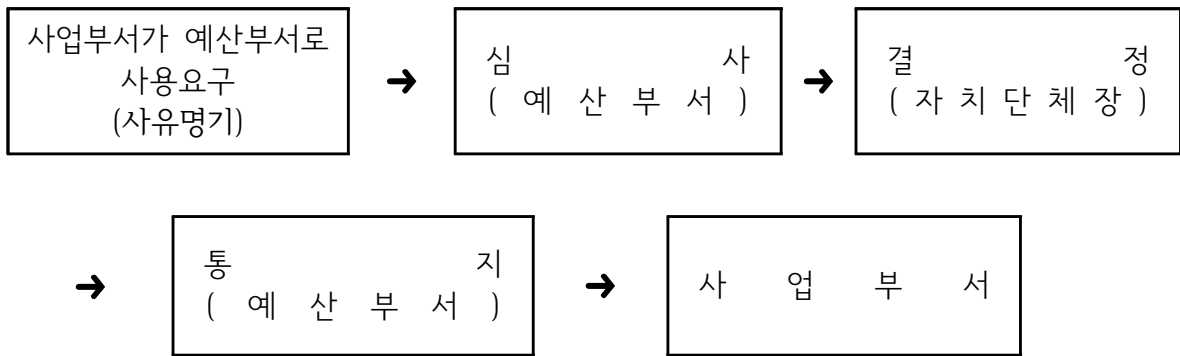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기재된 “수수료”는 무인경비, 정밀검사, 방역 등 행정사무와 직결된 소규모 용역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써 선결제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위한 발행수수료나 할인보전금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한 지출 사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발행운영수수료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고 있는 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지침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유사한 지역상품권 발행수수료나 할인보전금이 편성·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에 적정 세출과목 신설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건의 경우, 당초 ①발행수수료(16억 5,000만원)와 ②추가적립금(100억원)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계획하고, 승인신청한 것이나

- 실제 지출된 예비비(116억 5,000만원)는 한국OO결제진흥원에 ①발행수수료(16억 5,000만원)와 ③할인보전금(1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규칙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가 예산부서로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심사하여 결정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3-11〉 예비비의 사용요구 및 사용결정 절차



- 동 예비비 지출건은 당초 ①발행수수료(16억 5,000만원)와 ②추가적립금(100억원)을 지출하고자 '20년 12월24일 예산부서에 예비비 116억 5,000만원을 사용승인 신청한 건이나 실제로는 ①발행수수료(16억 5,000만원)와 ③할인보전금(100억원)을 지출한 바, 당초 예비비 사용요구 내용과 실제 지출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당초 사용계획을 수정한 이후 예비비가 지출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소방학교 생활관(새빛관)이 사용결정('20. 8.19)됨에 따라 해당기간 출·퇴근이 불가능한 교육생(21명)에게 외부숙소를 운영('20. 8.21~9.10) 하고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에 대해 일반회계 예비비중 1,263만원을 사용계획하고, 전액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 동 예비비 지출건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력 공백방지 등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중 1,26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으로 관련 규칙에 따라 계획수립 당시부터 사용승인 과정까지 예산부서가 심사·결정한 지출사례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을 통해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야·부문으로 구분하고, 사업별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와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은 분야, 부문은 물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모두가 상이하어 예비비의 긴급한 지출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를 소방안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지출한 것은 회계간 칸막이를 초월한 회계질서 문란 사례로 판단됨

〈표 3-12〉 회계 및 정책사업간 구분을 초월한 예비비 지출 사례

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양성		
			소방학교 운영	
				소방인재 채용 및 양성

- 특히, 현행 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 한정하여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결과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무력화시킨 예비비 지출 사례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예비비 지출건의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어 ①'20년 8월21일 관련 방침 수립, ②'20년 8월27일 예산부서 예비비 사용승인, ③'20년 9월22일 예비비 지출 등의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 이미 '20년 8월 12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20년 9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어 법령위반을 초래하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기 보다는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중 조정을 요청하는 합법적 선택이 필요하였던 사안으로 판단됨
- 안전총괄실은 코로나19에 따라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검진안내**에 대해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1억 9,300만원을 사용승인 요청하여 배정된 예비비중 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4,500만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하면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 동일한 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적시하고 있고,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고 별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 동 예비비 사용건의 경우, ① '20년 7월 10일 결재된 방침에는 관련 안내소 운영기간을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기재하고 있고, ② '20년 7월 12일 결재된 예비비 사용계획에도 관련 안내소 운영기간을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적시하고 있어 예비비중 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나
 - ③ '20년 7월 15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통지한 이후 ④ 같은날('20년 7월 15일) 사업부서는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며 당초 예비비 사용계획에 기재된 용역기간이 아닌 2020년 7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관련 용역계약도 '20년 7월 17일 착수하여 '21년 1월12일 완수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월사유가 충족되면 이월이 가능할 것이나 이월액이 발생된 동 예비비 지출사례의 경우에는 불과 수일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계획은 물론 예비비 승인요청 당시까지도 용역기간을 연도말로 적시하였으나 예비비 사용승인 당일 계약을 의뢰하며 회계연도가 경과된 용역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건의 경우, 예비비 사용계획 당시부터 이월을 전제한 예비비 사용요청 사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열거된 예비비의 내재적 지출제한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행정국은 ①이동식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비용정산, ②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비용정산을 위하여 '20년 3월과 4월 사용승인된 개별건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8억원이 지출결정된 것으로 제출됨
- 2020회계연도 결산서중 부서별 세출결산과 비교·검토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지출결정된 8억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예방**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예방**을 위하여 개별 사용승인된 총 10건의 예비비 지출 건중 3건의 지출잔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예비비 지출 결산결과를 제출한 바,
- 세부사업 차원에서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비비가 사용승인된 개별 지출 사례중 3건의 지출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보고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용승인된 예비비의 배정범위를 초월한 지출사례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예비비 지출사례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예비비 지출 사례처럼 예비비 지출을 위해 세부사업을 신설한 경우에는 소요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을 변경하거나 위법한 ‘당겨사용’이라도 할 수 있는 ‘당초예산’ 조차 없다는 점에서 예비비 지출잔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된 3개 지출건은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3-13〉 예비비 지출결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예방)

(단위 : 원, %)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계	800,659,000	722,181,620	78,477,380	
사무관리비	56,390,000	43,472,410	12,917,590	이동식 선별진료소(Drive-Thru)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77,065,000	156,193,580	△79,128,580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161,675,000	74,747,740	86,927,26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공공운영비	40,000,000	32,500,000	7,500,000	코로나19 확산방지 본청사, 별관 소독 실시
공공운영비	64,670,000	76,966,500	△12,296,500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3,534,000	28,902,620	△15,368,620	이동식 선별진료소(Drive-Thru)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86,000,000	139,301,270	46,698,73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시설비	79,000,000	64,400,500	14,599,500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	84,000,000	73,525,000	10,475,00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8,325,000	32,172,000	6,153,00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①여성가족정책실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20년 3월 31일,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예비비 58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시민건강국은 ②**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에 '20년1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를 사유로 예비비 15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③**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에 '20년 3월 31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사유로 예비비 2,750만원을 지출결정 한 것이나

- 사용요구 및 지출결정된 예비비를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지출잔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제출됨
-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200억원으로 한정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예산액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나 예비비는 지출결정한 이후 발생한 지출잔액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고, 잉여재원이라 할지라도 통상 재활용 하지 않는바,
- 예비비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되는 한정된 재원이라는 예비비의 당초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지출결정된 예비비 전액을 지출하지 못하는 예비비 지출요구나 사용결정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지출결정된 예비비 전액을 지출잔액으로 처리한 현황

(단위 : 천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5,840	5,840	2020. 3.31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공공운영비	1,500	1,500	2020.12.23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민간위탁금	27,500	27,500	2020. 3.31

- 행정안전부위에 의하면, 예비비에 대한 지출잔액을 예비비로 환원하는 것도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예비비의 지출제한에는 동일 사업에 예비비를 반복지출 하는 것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거나 지출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바,
- 예비비 지출을 검토할 경우, 필요최소한의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하여 한정된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불용시키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5〉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주1)}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건수 ^{주3)}
합	계 ^{주2)}	126,743	(100.0)	125,818	877	113
행	정	37,212	(29.4)	37,124	87	14
	노 동 민 생 정 책 관	17,901	(14.1)	17,901	-	4
	시 민 건 강 국	16,011	(12.6)	15,452	558	14
	도 시 교 통 실	12,206	(9.6)	12,206	-	8
	주 택 건 축 본 부	8,351	(6.6)	8,347	4	8
	기 후 환 경 본 부	5,777	(4.6)	5,764	12	1
	안 전 총 괄 실	4,257	(3.4)	4,210	42 ^{주4)}	7
	여 성 가 족 정 책 실	4,248	(3.4)	4,206	36	9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4,109	(3.2)	4,109	-	2
	경 제 정 책 실	3,133	(2.5)	3,115	15 ^{주5)}	5
	상 수 도 사 업 본 부	2,852	(2.3)	2,752	100	6
	물 순 환 안 전 국	2,840	(2.2)	2,840	-	2
	복 지 정 책 실	2,341	(1.8)	2,341	0	14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1,539	(1.2)	1,520	19	5
	도 시 공 간 개 선 단	1,468	(1.2)	1,468	-	3
	푸 른 도 시 국	1,294	(1.0)	1,293	1	2
	시 민 소 통 기 획 관	450	(0.4)	430	20	1
	지 역 발 전 본 부	313	(0.2)	313	-	1
	문 화 본 부	289	(0.2)	276	12	3
	관 광 체 육 국	131	(0.1)	129	2	3
	소 방 재 난 본 부	12	(0.0)	12	0	1

※ 주1) 지출결정액 규모순

주2)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에 따라 “계”와 “실본부국별 집행잔액”간 차이 있음

주3)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통계목 기준)

주4)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검진안내’ 이월액 4,500만원 미포함

주5) ‘홍릉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이월액 300만원 미포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승인(2021. 7. 2.)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호	2511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615억 5,300만원 중 1,267억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58억 1,8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480억 3,700만원
- 지출 결정액	1,238억 9,100만원
- 지출액	1,230억 6,600만원
- 이월액	4,90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7억 7,7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91억 200만원
- 지출결정액	28억 5,200만원
- 지출액	27억 5,3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억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44억 1,400만원
- 지출결정액	0만원
- 지출액	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

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